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

2022년 4월 5일

국 무 총 리 김 부 겸

국 무 위 원
법 무 부 장 관 박 범 계

●대통령령 제32562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검사”를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 “위원이 지명하는 5명”을 “위원 각자가 1명씩 지명하는 6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1명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별 운영세칙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에 해양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